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16
------	------

발의일자 : 2023. 3. 10.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엄삐별 의원

고영찬 의원, 도병두 의원

## 1. 제안이유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부재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신체적·정신적 질병 예방과 건강의 유지·증진 및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다. 안심주치의 지정(안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제공범위(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실비지원 및 안심주치의 지정해제(안 제8조 및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3)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 4)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3. 11. ~ 2023. 3. 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금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전문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구청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 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

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지역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1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